

Tax Newsletter

법인소득세에 관한 시행규칙 제20/2026/TT-BTC호 및
개인소득세 시행령(초안)의 주요 내용

2026년 4월



A. 시행규칙 제20/2026/TT-BTC호의 주요 업데이트

2026년 3월 12일, 베트남 재무부는 법인소득세("CIT")법과 해당 법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20/2025/NĐ-CP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제20/2026/TT-BTC호(이하 "시행규칙 20")**를 공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20은 실무 적용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인소득세 제도의 법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비용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 요건을 표준화·구체화하고, 과세소득으로 인식되는 매출의 범위 및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베트남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외국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초기 적용 기간 동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과규정도 도입하였습니다.

시행규칙 20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시행규칙 20의 주요 신설 규정을 요약하여 소개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이 세법 변경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행 규정을 준수하며, 실무상 손금 인정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증빙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

④ 손금산입 비용에 대한 증빙

시행규칙 20은 기존 시행규칙 78/2014/TT-BTC 및 시행규칙 96/2015/TT-BTC와 비교하여,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비용에 대한 증빙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용에 대한 상세한 지침 제공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친환경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비용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임직원 교육 및 직업훈련 비용
- ✓ 동일 과세기간 내 매출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비용, 예:
 - 입찰 실패로 발생한 비용
 -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및 R&D 실패 비용
 - 공실 기간 중 임차자산 감가상각 또는 배분 비용
 - 생산·영업 개시 전 인프라 유지 비용
 - 사업 종료 또는 해산 시 사이트 복구 비용
- ✓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비용
- ✓ 임직원이 사업 목적상 위임을 받아 VND 500만 이상의 재화·용역을 구매한 경우 발생 비용

회계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실제 비용 발생을 입증하는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아래 표는 시행규칙 20에 따른 대표적인 손금산입 비용의 주요 증빙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증빙을 적절히 준비하고 세무조정 및 세무조사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증빙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

비용 유형		증빙서류
직원 교육 및 직업훈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정책이 명확히 규정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무/내부 규정 직원 교육 승인 결정서 교육 등록 서류, 졸업장, 수료증 또는 교육 결과 확인서
교육, 의료 및 재해 구호를 위한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rcular 20과 함께 발행된 양식 No. 01/TNDN에 따른 기부 확인서
당기 수익과 대응되지 않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패한 입찰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공고 서류 및 입찰서류 낙찰 결과(있는 경우) 입찰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제품/서비스 관련 실패한 시장조사 또는 연구개발(R&D)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에 따른 시장조사 보고서, 제품/서비스 개발 연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개시 전 단계의 토지 임차료, 관리비 및 인프라 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정책 승인 결정서, 투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문서(있는 경우) 지급 비용이 명시된 토지 또는 인프라 임대 계약/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이 없는 기간 중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 또는 배분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 임차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자산 관리 및 회계 장부/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설립, 복구, 영업중단, 해산 또는 종료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 등록증 규정에 따른 영업중단 또는 재개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전 마케팅 및 판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정책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되었거나 진부화된 재고자산의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한 있는 자의 재고 폐기 결정서 폐기 사유, 품목, 수량, 가치 및 처리방안을 기재한 재고 평가조서 폐기위원회 설치 결정서 폐기위원회의 처리 결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되었거나 진부화된 유형자산의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한 있는 자의 유형자산 폐기 결정서 자산 폐기 관련 자료 손상 사유, 자산 종류, 수량, 가치 및 처리계획을 명시한 자산 평가조서 폐기위원회 설치 결정서 폐기위원회의 처리 결정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 저감 시행을 승인하는 권한 있는 자의 결정서 생산 및 영업활동과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젝트 또는 계획 관련 서류
직원 위임 구매 비용(5백만 VND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정보로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직원 위임 구매에 관한 내부 재무규정 또는 정책 직원이 비현금 방식으로 결제한 증빙 회사가 직원에게 비현금 방식으로 상환한 증빙

확장 투자자본 및 과학기술개발기금 관리

Circular No. 78/2014/TT-BTC와 비교할 때, Circular 20은 확장 투자자본 및 기업의 과학기술개발기금(“S&T Fund”) 관리에 관한 여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확장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기업은 법인소득세(CIT)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해당 프로젝트의 등록 투자자본을 서면으로 세무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늦어도 해당 확장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연도 내에는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투자자본에 이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사항을 적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Circular 20은 S&T Fund에서 조성된 고정자산에 대한 과세 처리 방법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에 사용되었으나 아직 전액 감가상각되지 않은 자산이 생산 및 영업활동에 사용되도록 이전되는 경우, 그 잔존가액은 기타소득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잔존가액은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법인소득세 목적상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기금이 적절히 관리·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Circular No. 80/2021/TT-BTC와 함께 발행된 Form No. 03-6/TNDN에 따라 S&T Fund의 적립 및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CIT 과세소득 인식시기

Circular 20은 베트남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베트남 기업 및 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특정 활동에 대한 CIT 과세소득 인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Circular 20은 수출상품, 항공운송 서비스, 건설 및 설치 활동(조선 포함), 그리고 전기 및 수도 공급에 대한 과세소득 인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외국 기업의 경우: Circular 20은 자본 양도, 증권 및 예금증서 양도, 그리고 파생증권(선물계약)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인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양도와 관련하여, Circular 20은 최초 자본 양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소득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initial)”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소득세에 일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책임은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에 발생합니다.

실무상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거래에서 자본 양도 계약은 여러 차례 수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초 계약 시점과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을 고려할 때, 기업은 세무당국의 추가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업데이트를 반영하고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국기업의 납세의무 확대 및 명확화

Circular 20은 외국기업의 CIT 납세의무를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별도로 가이드되지 않았던 일부 사업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활동: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거래를 수행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Circular 20에 따라 CIT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업집단 내부 구조조정 거래: Circular 20은 기업집단 내부 구조조정 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가 최종 모회사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소득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CIT 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CIT 계산 방법: 외국기업이 납부해야 할 CIT는 과세매출액에 적용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Circular 20은 기존에 외국계 계약자에 대한 CIT 과세매출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던 Circular 103/2014/TT-BTC 제13조 제1항 a호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CIT 과세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외국기업의 과세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전체로 간주됩니다.

4. 경과규정

Circular 20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규정은 2025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손금산입 가능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은 계속하여 Circular 96/2015/TT-BTC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현금 결제 요건 및 자본 양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Circular 20이 Decree 320의 시행일인 2025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Circular 20은 Circular 78/2014/TT-BTC 및 Circular 96/2015/TT-BTC를 공식적으로 대체하며, 다른 시행규칙들에 분산되어 있던 일부 관련 규정(예: Circular 119/2014/TT-BTC, 151/2014/TT-BTC, 130/2016/TT-BTC 및 25/2018/TT-BTC 포함)도 폐지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CIT 규제 체계가 확립되며, 중복 및 불일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 조직에 적용되는 CIT 정책과 관련하여, Circular 20은 Circular 103/2014/TT-BTC상의 관련 규정도 함께 폐지합니다. 이는 VAT 법 및 Decree 181/2025/ND-CP를 안내하는 Circular 69/2025/TT-BTC와 함께, 외국 법인에 대해 별도의 조세 규정을 유지하던 체계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외국기업의 납세의무를 별도로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 문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B. 신규 개인소득세(“PIT”)법 시행령 초안

2026년 3월 27일, 재무부는 2025년 PIT법의 일부 규정을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초안은 우선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을 명확히 하고, 경제 여건에 맞추어 지원 수준, 공제 및 수당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우선 분야 종사자의 급여 및 임금에 대한 PIT 면제

본 시행령 초안은 다음 개인이 받는 급여 및 임금에 대해 PIT 면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 고급 디지털 기술산업 인력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전략기술 관련 활동으로 소득, 최대 5년간 우대 조건 제공

2. 중간근무 식대 및 점심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본 시행령 초안은 비과세 대상 중간근무 식대 및 점심수당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현금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1인당 730,000 VND에서 월 1인당 1,200,000 VND로 상향
- 사용자가 사내 조리, 식사 구매 또는 식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3.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에 대한 PIT 면제(법정 한도 초과 금액 포함)

본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 또는 실직수당을 정한 경우, 그 초과 금액도 계속하여 PIT 면제 대상이 됩니다.

4. 초과근무, 야간근무 및 비휴일 근무 소득에 대한 PIT 면제

본 시행령 초안은 노동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비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임금에 대해 PIT 면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PIT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본 시행령 초안은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이 부담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방안 1:

- ✓ 의료비: 연간 최대 20,000,000 VND
- ✓ 교육 및 훈련비: 연간 최대 21,000,000 VND

▪ 방안 2:

- ✓ 의료비: 연간 최대 23,000,000 VND
- ✓ 교육 및 훈련비: 연간 최대 24,000,000 VND

6. 추가 연금보험 및 생명보험 보험료 공제 한도 상향

본 시행령 초안은 과세 대상 PIT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추가 연금보험 및 생명보험 보험료의 최대 공제 한도를 월 1인당 1,000,000 VND에서 월 1인당 3,000,000 VND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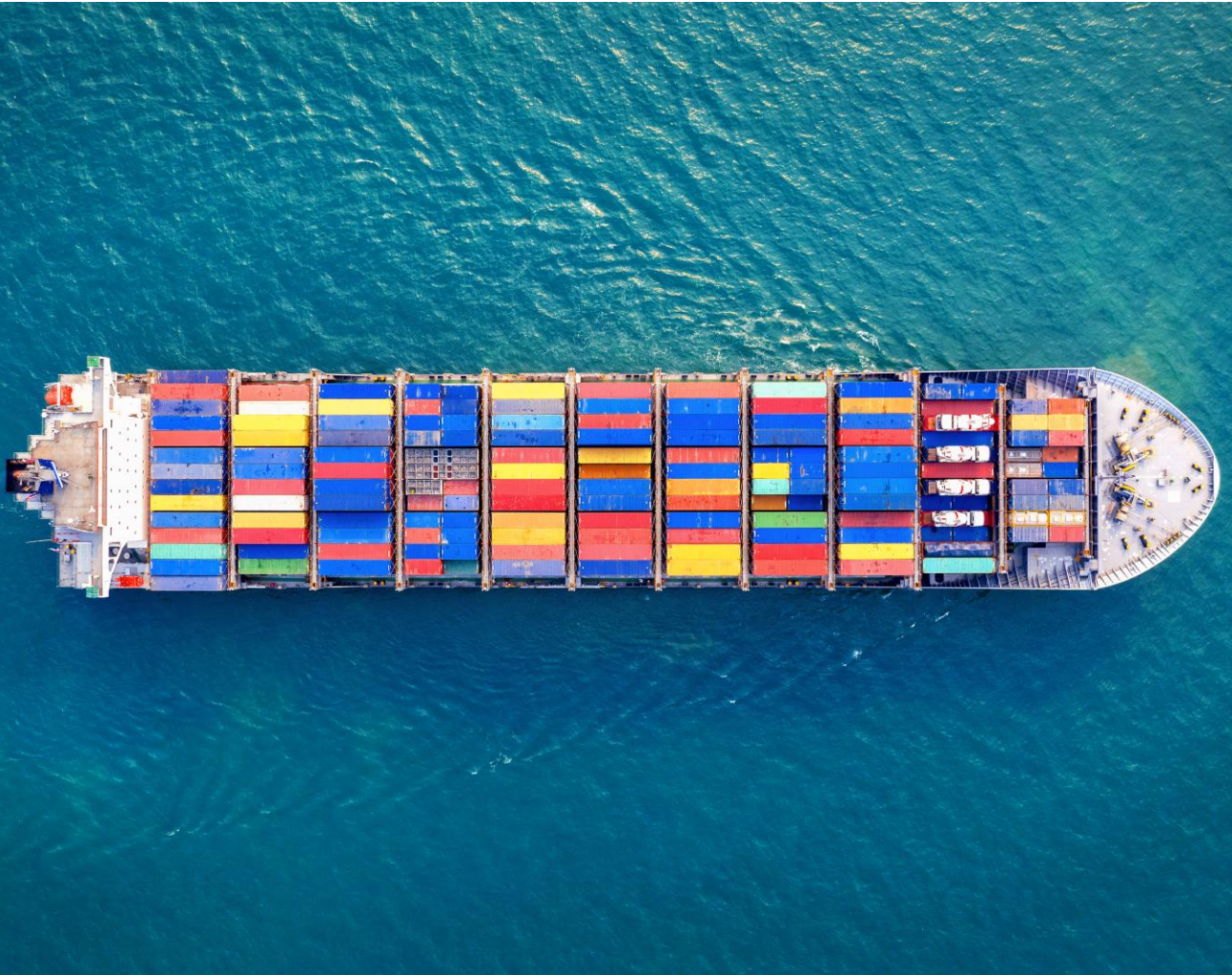
7. 비정기 소득에 대한 10% PIT 원천징수 적용 기준 상향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본 시행령 초안은 다음과 같은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급여, 임금 및 보수 성격의 소득을 근로계약이 없거나 3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10% PIT 원천징수 적용 기준을 건당 2백만 VND에서 건당 3백만 VND로 상향.

이미 10% 원천징수가 적용된 소득에 대해 PIT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 되는 연간 소득 기준을 연 1천만 VND에서 연 1천5백만 VND로 상향.

당사의 평가에 따르면, 현행 규정과 비교할 때 본 시행령 초안의 제안들은 많은 경우 PIT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키고, 신고 및 납부 절차 측면에서도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시행령 초안은 아직 의견수렴 절차 중에 있으므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뉴스레터를 통해 소중한 고객 여러분께 최신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처

새로 공표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세 및 세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신고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추가 세무의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내부 준수 절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및 관세 준수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심층적인 자문을 위해 Grant Thornton Vietnam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당사의 [Tax Hub](#) 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본사

18층,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Nghia Do Ward,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

호찌민시 사무소

14층,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Thanh My Tay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Doan Thi Huong Ly

Korea Desk Director

T +84 24 3850 1686 – Ext: 1655
E Ly.Doan@vn.gt.com



Valerie Teo

Partner, Head of Tax Services of HCMC Office

T +84 28 3910 9100 – Ext: 9235
E Valerie.Teo@vn.gt.com



Hoang Khoi

Senior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T +84 24 3850 1686 – Ext: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T +84 28 3910 9100 – Ext: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T +84 24 3850 1686 – Ext: 1716
E Ngan.Bui@vn.gt.com



Dang Hai Ha My

Tax Director

T +84 28 3910 9100 – Ext: 9241
E My.Dang@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T +84 28 3910 9100 – Ext: 9240
E Tho.Lac@vn.gt.com



Do Vu Bao Khanh

Tax and Transfer Pricing Director

T +84 28 3910 9100 – Ext: 9277
E Khanh.Do@vn.gt.com

